

『구미시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06년 3월 13일

나. 제 안 자 : 구 미 시 장

다. 회부일자 : 2006년 3월 13일

라. 상정일자 : 2006년 3월 16일

제112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상정, 질의, 토론,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가. 제안설명자 : 행정지원국장 이 재 응

나. 제안이유

- 구미시에서 시행하는 각종 건설공사 및 물품의 제조, 구매, 용역 등의 계약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2조(계약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 및 영 109조의(계약심의위원회의 운영) 규정에 의거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계약의 적정성과 적법성을 심의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 구미시계약심의위원회는 위원장1인과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함(안 제2조)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참가자의 자격제한에 관한사항 등 위원회 기능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4조)
- 계약 담당자는 위원회의심의 또는 자문을 받고자하는 경우에는 심의 또는 자문 요청서에 관계 서류를 첨부 요청하고 위원회는 부의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심의 또는 자문 할 수 있도록 규정 함(안 제7조, 제8조)
-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금액을 추정가격이 3천만원이상 1억원이하의 공사로하고 주민참여대상 공사명과 주민참여감독자의 자격기준을 규정함(안 12조, 제13조)
- 위원회의 위원 및 관계전문가와 주민참여감독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토록 규정함.(안 14조)

라. 참고사항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지방계약관련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할 조례 표준안 통보
- 경북도 재정과-23507('05.12.22)호와 관련임

3. 검토보고의 요지 - 전문위원 이 수 영

-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각종 계약업무가 지방재정법 및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2006. 1. 1부터 시행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이와관련된 세부사항을 법령과 행정자치부의 표준안에 부합되게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 주요내용은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인원을 15인 이내로 하고 소위원회는 5인 이상 10인 이내로 하였으며,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금액은 추정가격이 3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공사로 하고 주민참여대상공사명과 주민참여감독자의 자격기준, 위원회의 기능 등 운영에 관한 세부절차를 규정하였습니다.
- 조례안 검토결과 재검토사항은 안 제14조제1항중 별표에 계약심의위원회의 수당 및 여비 등 지급 기준금액을 계약심의위원회 수당 10만원, 심사 또는 자문비 20만원, 주민참여감독자 수당 2만원 등으로 조례에 금액을 명시하고 있어 향후 수당인상 등의 요인이 발생할 경우 요인 발생시 마다 다시 조례를 개정해야하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수당지급 기준금액의 조례 명시 여부를 심도있는 검토가 요구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7. 심 사 결 과 : 수정가결